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5027020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정우, 김선호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2. 23.까지, 146,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24.부터 2022. 9. 15.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146,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개발용역 및 컨설팅 계약

1) 무인로봇 개발기술을 보유한 원고는 2019. 1. 4. C 커피머신 제조기술을 보유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무인로봇(로봇팔)에 연동하여 작동가능한 C 커피머신(이하 ‘이 사건 커피머신’이라 한다)을 피고가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용역 및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요구사항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을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첨부1의 납품목록과 같은 개발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이행)

을은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갑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 및 납품)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한 요구사항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 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 입증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4. 갑의 검수결과 을이 납품할 개발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7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최종 납품일)

전 제3조 제2항의 검수에 대한 기준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제시한 요구사항서 또는 시험절차서 등의 서면에 의하며, 동 기준에 따라 개발제품이 독립적으로 또는 관련 장비의 일부로서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때에 최종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체상금)

을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재제작함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서 지연일수 1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갑에게 있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200,000,000원으로 정하고 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차: 계약 당일 95,000,000원 아래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2차: 10,000,000원을 2019. 1. 18.까지 아래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3차: 95,000,000원을 2019. 1. 31.까지 아래 입금계좌로 입금한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피고

제7조(계약 이행 보증)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선금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제6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의 금액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발제품 구매)

을은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품의 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인 개발제품의 납품과 동시에 생산원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갑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개발제품의 판매를 위해 생산원가에 15% 마진을 붙인 가격에 갑으로부터 개발제품을 제 구매한 다.

제10조 (생산 감독)

갑은 개발제품의 설계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후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나. 입고된 개발제품의 상태가 제2조의 요구조건과 현저히 상이하고 납품 검사시 합의된 시험항목의 50% 이상이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의 20% 이상 최종납품일이 지연된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갑 또는 을의 권리나 손해 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경우는 을은 동 시점까지 수행한 개발의 결과물 및 기술자료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에 여하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을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동 개발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4. 갑 또는 을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첨부1. 납품목록 및 납기일

■ 품명: C 커피머신

■ 브랜드: D

■ 원산지: 한국

■ 내용: 아메리카노, 라떼, 핫초코, 냉온정수기 추가 모델로 원고가 개발 중인 무인로봇 커피머신(키오스크)에 사용가능한 모델

■ 납기일: 2019. 2. 8. 전까지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2019. 1. 4. 95,000,000원, 2019. 1. 18. 10,000,000원, 2019. 2. 15. 47,500,000원, 2019. 2. 22. 47,5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계약 이행 경과

1) 피고는 2019. 2. 중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개발한 기존 C 커피머신 제품을 일부 수정, 보완한 커피머신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커피머신에 다수의 오류와 하자가 있다며 수정,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9. 11.경까지도 피고와 지속적으로 무인로봇에 연동할 이 사건 커피머신의 품질과 사양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사항, 검사항목, 시험절차에 맞추어 이 사건 커피머신 개발 및 수정,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20.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의 개발 및 납품의무가 지체되고 있다며 2020. 6. 10.까지 계약이행사항을 전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20. 6. 16. 원고가 이 사건 커피머신의 수정, 보완사항에 관하여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3) 원고는 2020. 10.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C 커피머신 장치개발명세서’를 첨부하여 2020. 10. 30.까지 이 사건 커피머신의 개발 및 납품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새로운 커피머신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발능력의 부재로 납기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21. 1. 31.까지도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커피머신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제16조 제1항 가호 및 다호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200,000,000원 및 납기일로부터 1년까지의 지체상금 146,000,000원의 합계 3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당시 커피머신 요구사양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피고가 기존에 개발한 커피머신에 약간의 기능상 수정을 한 후 납기일까지 1차 납품을 하면 이후 원, 피고가 합의하여 사양을 정하고 최종 납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2019. 2. 중순경 커피머신을 납품하여 이행의무를 다하였다.
- 2)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은 피고가 개발할 커피머신의 상세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행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조차 없었으므로 의무내용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 이행지체는 성립할 수 없고, 이행지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커피머신은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서 부대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커피머신의 개발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계약이 단순한 제조공급계약이 아니고 커피머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종류의 커피머신을 개발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에 커피머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수적 의무가 계약의 주목적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납품의무 이행여부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에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순수수취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은 원고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피고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 공급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고(제1조), 피고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원고와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제2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에게 개발목적 커피머신의 요구사양이 구체화된 계약특수조건이나 요구사양서,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9.

2. 중순경 피고가 개발해둔 기존 커피머신의 성능을 일부 보완하고 수정한 커피머신을 원고에게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2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9. 2. 중순경 원고에게 인도한 커피머신이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으로서 계약에서 정한 대로 주요 부분이 제작되고 무인카페 커피머신으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제품개발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은 첨부된 납품목록에 명시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하도록 하였고(제3조 제1항), 첨부된 ‘납품목록과 납기일’에서 납기일을 2019. 2. 8.로 정하면서 계약목적물은 ‘아메리카노… 냉온정수기 추가모델로 원고가 개발 중인 무인로봇 커피머신(키오스크)에 사용가능한 모델’이라고만 명시하였다. 또한 피고가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시한 요구사양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 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원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제3조 제2항), 위 검수에 대한 기준은 원고가 정하여 피고에게 제시한 요구사양서 또는 시험절차서 등 기준에 따라 개발제품이 정상적이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원고가 인정하는 때 최종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4조)고 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이 개발목적 커피머신의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납품 등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제시하는 요구사양이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라고만 정한 것은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의사로 또는 그러한 요구를 만족할 제품을 개발가능하다는 확신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② 설령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당시 개발목적 커피머신의 구체적 사양이 명백히 정해진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이후 피고가 기존에 개발한 커피머신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수차례 밝히고 피고와 개발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았다고 할 것이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의 의무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9. 2. 중순경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커피머신에 대하여 2020.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기능이나 형태 등의 보완과 수정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수정을 요구한 항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대체로 컴퓨터의 메인보드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어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능하며, 무인로봇이 24시간 연속하여 커피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들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무인카페에서 상용가능한 커피머신으로서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 분말로 인한 덩어리 현상, 배관이 막히고 음료가 나오지 않는 것을 개선
- 통신선 구비 및 연결
- 잔량 센서 설치
- 음료의 냉장보관
- 7~9잔 이상으로 따뜻한 차의 연속 추출가능
- 균질한 온도, 분량의 제품 제공
- 300잔 분량 공급 가능할 것
- 커피 원액통의 분리세척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변경

④ 위 항목 중 통신선 연결과 관련하여 RS232C 네트워크 방식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개발한 무인카페의 메인 제어장치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에 해당하나, 그 외의 항목들 대부분 원고만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무인카페 커피머신의 상용화를 위한

범용기술에 가깝다고 보인다(위 네트워크 방식의 경우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기술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커피머신의 성능에 대한 아무런 의사합치도 없이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진의는 피고가 기존의 커피머신 제품에 약간의 기능상 수정만 가한 후 1차 납품을 하되 개발과정에서 사양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확정하고 최종품은 추후 완성하여 납품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내용은 모두 형식적이고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개발용역계약의 가장 주요한 계약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검수와 납품 및 지체상금에 관한 계약규정을 당사자가 형식적으로 계약내용에 포함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어디에도 납기일까지 완성품이 아닌 테스트 제품을 납품한다거나 납기일 이후에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 사양을 확정하고 완성품을 납품하기로 정한 바 없으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없다.

⑥ 원고는 2019. 2. 중순경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커피머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기능이나 형태 등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2020. 10. 5.경 개발목적물의 최종 검수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양을 보내면서 2020. 10. 30.까지 납품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커피머신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다.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

1) 약정해제권의 행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제16조 제1항이 정한 ‘계약 후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의 20% 이상 최종납품일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2021. 2. 23.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제5조가 납품의무 지연일수 1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피고가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의 납기일인 2018. 2. 8.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의 개발능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머신의 최종납품일이 계약기간의 20% 이상 지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은 원고의 약정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200,000,000원과 약정 지체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납품일로부터 1년분에 해당하는 146,000,000원(=200,000,000원×2/1,000×365일)을 합한 3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귀책사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9383 판결 등 참조). 원, 피고가 커피머신의 요구사양을 정한 바가 없어 피고의 동의 없는 요구사양이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부당함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커피머신의 요구사양이나 기술수준이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이 의도한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0원 및 그중 용역대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2. 23.까지, 지체상금 14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용역계약을 해제한 다음날인 2021.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